

대학등록금 책정모델 개발 연구

김 흥 식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연구는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쟁점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방적인 정부 규제에 의한 등록금 인상 억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과정 및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책정모형을 연구·개발하여, 대학 내 관련 주체들 간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제방 쟁점사항들 보다는 새로운 등록금 책정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대학등록금 모형의 핵심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책임중심점이 단과대학 또는 학부·학과로 이양된 분권화 방식이므로 이 과정에서 좀 더 대학 나름의 특수성이라든지 제공 프로그램 혹은 사업과 관련된 해당 단과대 등의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성원 전체의 합의 도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타 대학과의 차별화, 그리고 등록금 책정과정의 공개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행된 만큼 유사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학점 기준에 의한 차별적 등록금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 현행 대학등록금 책정제도의 문제점

기존의 관련 연구는 대학교육원가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와 대학등록금 책정모형에 대한 연구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는 대학교육원가의 계산모형이나 분석모형을 제시하거나 이들 모형을 바탕으로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많은 연구들은 대학교육원가의 계산(costing)과 등록금의 책정(pricing)을 구분하려고 노력하였다(김흥식, 1997; 정진필, 2002).

그러나 기존의 대학등록금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예산시스템과 연계하지 못하

※ 이 자료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비(교육정책 연구과제 '대학등록금 실태분석 및 책정모형 개발 연구')에 의해 연구된 자료를 요약한 것임

였기 때문에 산정된 원가정보의 상당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가격(등록금) 결정에는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학예산회계와 연계되지 못함은 결국 관리회계의 근간인 '예산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예산과 지출 및 등록금 결정을 통합적인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이 방면의 기존의 선행연구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자원소비액을 측정하여 교육원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자원 배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며, 또 그것을 기초로 오도된 미래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학교육원가 산정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원가 차이도를 분석하였으나,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대학교육원가 산정 모형은 이론적이어야 하며, 또한 대학 구성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수용하여 제도에 즉각 반영해야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결정 시 적용해야 하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모두 수용하여 대학 구성원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끝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는 시간제, 학점단위등록제, 계절학기제, 학점은행제 등과 같은 열린 교육을 위한 정책을 일관된 논리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여러 이유로 3학점을 신청한 학생이나 18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동일한 강의원과 학생활동 및 시설 사용원가를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소비활동에 비례한' 교육원가의 산정이라는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체계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등록금을 누가 수납하여 예산 편성하느냐에 따라 국비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하여 부과시키는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자원소비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는 교육서비스 가격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들며 더욱이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원적 회계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논의의 초점을 기성회 등록금 책정방안에 두어 개선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 새로운 대학등록금 책정모형

여기에서는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제안된 등록금 책정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수전공제, 시간제, 등록제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등록금 책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총 세입예산 중 등록금 수입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을 학생 개인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1. 대학등록금의 산정 구조

현재까지 연구된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모형은 투입된 교육원가를 기준으로 대학별·전공별 또는 학과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속대학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금액의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수강신청 학점 수가 다르고, 수강하는 교과목과 수강하는 대학이 소속대학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소속대학이 같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의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교육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학 당국의 편의만을 고려한 등록금 책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는 획일적인 등록금 책정방식을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이 수강하는 학점 수와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등록금이 소속 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수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1인이 입학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원가를 크게 변동비(variable cost)와 고정비(fixed cost)로 구분하였다.

고정비는 학생이 특정 단과대학·학과 또는 모집단위에 입학함으로써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단과대학의 관서운영비, 단과대학의 자산취득비, 단과대학의 시설장비유지비, 본부 공동운영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변동비는 학생이 수강신청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목으로 수강신청 내역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학점당 강의원가와 변동실험실습비가 여기에 속한다.

1)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명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명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결정하는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모집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소속 학과의 성격이 상이하여 교과과정의 특성이 다르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구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에는 학과단위로 이 표를 작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학의 기초과학부의 대부분 전공이 실험실습을 실시하지만 수학전공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이 없다. 이 경우 수학전공은 기초과학부의 타전공과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학점단위당 강의원가

김홍식(1997) 등의 연구에 따라 학점단위당 전체 평균 강의원가를 계산한 후 이에 가중치를 곱하여 각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의 학점단위당 강의원가를 계산한다.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학점단위당 평균 강의원가

$$\frac{\text{대학 전체 교수 및 시간강사 총 인건비 중 국고 비지원분}}{\text{학부 학생 수강신청 총 학점 수}}$$

<표 1> 수강신청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학점당 등록금 요율표(전일제 학생 기준임)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명	학점단위당 강의원가	학점단위당 변동실험실습비
경상대학		
.....		
.....		

<표 2> 소속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요율표(전일제 학생 기준임)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명	학생 1인당 단대 운영비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본부 공동운영비
경상대학				
.....				
.....				

위 계산식에서 국고 비지원 인건비는 직전 회계연도의 국고 비지원 인건비에 국고 지원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직전 회계연도의 국고 비지원 인건비} \times (1 + \text{공무원 급여 인상률})$$

이때 대학원 강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대학원생이 부담할 강의 원가를 위의 계산식에서 감안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병주의 연구(1998)와 같이 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학부와 대학원으로 강의원가를 안분한다.

따라서 위의 학점단위당 평균 강의원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frac{\text{대학 전체 교수 및 시간 강사 총 인건비 중 국고 비지원분}}{\text{학부 학생 수강신청 총 학점 수} + \text{대학원 학생 수강 신청 총 학점 수}}$$

그리고 학생의 수강신청 총 학점 수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내게 되므로 미리 파악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학점단위당 강의원가

$$\text{①의 대학 전체 학점단위당 평균 강의원가} \times \frac{\text{당해 대학 개설 강의 및 실험 시수}}{\text{학점 수}}$$

③ 대학원별 학점단위당 강의원가

$$\text{①의 대학 전체 학점단위당 평균 강의원가} \times \text{대학원별 가중치}$$

③의 계산식에서 대학원별 가중치는 각 대학이나 학과의 논의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부여하면 될 것이다. 이는 학부 강의와 대학원 강의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학원별 가중치는 1로 부여하면 된다.

3) 학점단위당 변동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는 변동실험실습비와 고정실험실습비로 구분되는데, 변동실험실습비는 수강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다. 이는 실험실습기자재를 이용하여 실험실습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실험실습 시설은 실험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은 고정실험실습비(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속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학생 1인당 등록금 요율표에서 설명한 고정비에 속하는 것으로 변동실험실습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실험실습을 시행하는 단과대학·학과(모집단위)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비를 차등적으로 단과대학 또는 학과(모집단위) 예산회의 등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frac{\text{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변동실험실습비 예산}}{\text{변동실험실습비 관련 교과목 수강신청 총 학점 수}}$$

실험실습비는 사실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목당 변동실험실습비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과목당 실험실습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 물가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학생 1인당 단과대학 운영비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의 운영비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원가로서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인건비

를 제외한 교육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 활동 등에서 각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 별로 발생하는 원가이다.

단과대학 운영비는 ① 관서운영비, ② 자산취득비 및 사업비, ③ 고정실험실습비(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① 학생 1인당 관서운영비

단과대학 관서운영비에는 각 단과대학 행정 실이나 학과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직, 일용잡급직, 교육전문직, 행정조교, 연구조교 등의 인건비 중 국고 비지원 인건비와 각 단과대학별 관서운영비, 기준경비에다가 본부에서 집행하는 관서운영비 예산 중 해당 단과대학으로 배부 가능한 것을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해 각 단과대학에 배부한 금액의 합계액이 포함된다.

특정 단과대학과 관련이 있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보건대학원)의 관서운영비는 해당 대학원의 예산이 따로 있으므로 단과대학의 관서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단과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비는 각 단과대학의 관서운영비에 포함시키고, 공동실습관 같은 기관의 관서운영비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관련 단과대학에 배부한다.

관서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은 관서운영비는 대부분 소모성 경비이므로 직전연도 집행액에 불가수준 변동을 감안하여야만 최소한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에서는 예산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대학본부에서 미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여 각 단과대학의 소모성 경비 예산에 합산하여 각 단과대학별 관서운영비 합계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대학의 관서운영비 예산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감안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재학생 수

②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사업비

자산취득비·사업비도 관서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계산한다. 즉 자산취득비·사업비는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회의 등에서 과거의 집행액과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성원의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홍식 등의 연구(1997)에서와 같이 단과대학의 관서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당해 대학의 자산취득비·사업비 예산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감안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재학생 수

③ 학생 1인당 고정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예산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진다.

고정실험실습비(시설장비유지비)는 실험장비나 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실험실습기자재 관련 비용으로 수강학생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만일 고정실험실습비를 계산해 내기가 곤란하고 구성원들이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실험장비 취득가액의 10%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고정실험실습비 예산을 대신할 수 있고, 용어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여도 관계없을 것이다.

이 때 변동실험실습비 예산은 총 실험실습비 예산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이

될 것이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의 관서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고정실험실습비 예산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감안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재학생 수

5) 학생 1인당 본부 공통운영비

본부 공통운영비는 본부에서 집행한 단과대학 관련 국고 비지원 인건비, 강사료 등을 제외한 관서운영비,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중에서 각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에 배부되고 남은 잔액으로, 재학생이기 때문에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원가이다.

본부 공통운영비는 기획예산회의 등에서 본부 공통운영비 예산을 심의 후 확정하여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부 공통운영비 예산
 당해 연도 모집요강을 감안한 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

2. 가설 등록금 책정사례

위의 새로운 등록금 책정모형에 의해 실제 학부 재학생 1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사례〉 수강학생 A의 경우

▶ A학생의 등록금 내역

1) 강의원가

〈표 1〉에서 수강신청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 학점당 강의원가를 찾아 신청학점에 곱함으로써 본인(A학생)의 신청학점 18학점에 대한 강의원가를 계산한다.

경상대학의 학점당 강의원가 × 9학점 = ₩
 공과대학의 " × 6학점 = ₩
 문과대학의 " × 3학점 = ₩

A학생의 강의원가 ₩

2) 변동실험실습비

〈표 1〉에서 수강신청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별로 변동실험실습비를 부과하는 대학 등에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만 계산한다.

* 공과대학의 학점당 변동실험실습비 예산×6학점 = ₩

3) 학생 1인당 단과대학 운영비

① 학생 1인당 관서운영비

학생 A는 경상대학 소속이므로 〈표 2〉에서 경상대학의 학생 1인당 관서운영비가 학생 A의 부담분이다. 즉 〈표 2〉는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또는 학과, 모집단위)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위한 표이다.

②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사업비

학생 1인당 관서운영비와 동일하다.

③ 학생 1인당 고정실험실습비(시설장비유지비)

학생 A는 경상대학 소속이고, 경상대학은 실험실습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가정) 학생 A가 부담할 고정실험실습비는 없다.

4) 학생 1인당 본부 공통운영비

전교생이 동일한 금액이다.

▶ 학생 A의 등록금 고지액

1) 강의원가(18학점)	₩
2) 단과대학 운영비	₩
3) 변동실험실습비(6학점)	₩
① 관서운영비(경상대학)	₩
② 자산취득비(경상대학)	₩
③ 고정실험실습비(시설장비유지비) (경상대학)	₩
4) 본부 공통운영비	₩
합계	₩

실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경상대학 학생은 3), 4)는 같은 금액이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항목은 1) 강의원가 2) 변동실험실습비 3) 단과대학 및 본부 공통운영비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3. 등록금 책정절차

새로운 등록금 책정모형은 학부의 전일제 학생을 위한 모형이다.

이 등록금 책정모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① 수강신청이 등록금 고지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정되어야 한다.
- ② 각 대학(학과 또는 모집단위)별 예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본부 공통운영비에 대하여서만 본부에 두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후 확정한다.
- ④ 학생 개인별로 등록금이 전부 다를 수 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 ⑤ 전일제로 보는 학생의 최소 신청학점 수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C대학교의 경우 시간제 등록 학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 수는 12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전일제 학생(정규학생이라고도)으로 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⑥ 시간제 등록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학과 또는 모집단위)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의 가중평균요율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⑦ <표 2>의 요율은 전일제 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시간제 등록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전일제 학생의 표준 수강신청 학점이 18학점이라고 가정하면,

시간제 등록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 수 18 학점의 가중치를 <표 2>의 요율에 곱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대학등록금 모형의 핵심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책임중심점이 단과대학 또는 학부·학과로 이양된 분권화 방식일 것이다. 따라서 본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총괄하던 기존의 등록금 책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① 학과별로 학과 특성상 필요한 실험실습 경비를 책정하며 책정한 실험실습경비는 해당 학과예산에 편성한다(대학원의 경우도 동일).
- ② 대학별로 예산위원회를 두어 단과대학 운영비(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를 단과대학의 정책 및 특성에 부합하게 심의·편성하고 이를 해당 대학에 배부한다.
- ③ 대학 본부 공통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예산은 현행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편성한다.
- ④ 소속 단과대학과 성격이 상이한 학과(농경제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간호학과 등)의 등록금은 분리하여 책정한다.

Ⅲ. 맺음말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대학교육의 공공성,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교육적 필요의 충족, 대학의 정책 및 경영이슈, 대학의 재정상태, 재정수입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학등록금 책정모형 및 방안은 이러한 등록금 책정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육원가의 분석 결과와 교육 및 재정적 수요를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록금 책정모형 및 절차는 첫째,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의 대학교육 개혁안」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대학의 공공성과 종합성을 살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반영하며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대학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도 근본적인 구조조정(단과대학의 통폐합, 행정조직의 축소 및 쇄신, 보직의 축소, 유사 학과의 통폐합 등)과 교육, 연구 및 행정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바,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들은 이러한 개혁과제들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등록금 책정모형에 따르면 수강신청 학점 수와 수강과목,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이 모두 상이하게 되어 교무와 경리 행정상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현행 수강신청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등록금 책정모형은 실험실 습비를 변동실험실습비와 고정실험실습비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관한 자료 이용에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실험실습비로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도 될 것이다.

셋째, 종전과는 달리 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이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 중심점이므로 결산내용과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

제도가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강학점별 등록금 납입제도의 도입은 수혜자 중심의 대학행정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대학재정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 및 교육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입방향, 실행방법과 도입시기의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강학점별 등록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도입의 실익이 큰 대학원과정에 먼저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부과정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

김홍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소장,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한국회계학회·한국정부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회계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회계의 이해』, 「대학등록금 책정모형의 개발과 적용」, 「대학회계 분석과 등록금 책정연구」 등이 있다.